

〈2015년 정기세미나〉

“인격권 침해 기사와 그 펌글 및 댓글에 대해 삭제청구권 도입해야”

— 언론중재위, 세미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8월 20일, 21일 양일 동안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행 10주년을 맞는 언론중재제도도 디지털시대의 미디어환경 변화에 알맞도록 새롭게 변화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현재 언론중재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는 “설사 오보에 대한 정정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문제의 기사가 인터넷 공간에 여전히 존속하는 한, 피해자의 인격권은 계속해서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인터넷상의 오보나 이를 퍼 나른 글에 대해 삭제청구권이 나 접근차단권을 언론중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은 “현재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사삭제’를 새로운 언론 피해구제를 위한 청구권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전에 기사삭제의 요건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은 전통적인 2가지 원칙, ‘언론기관’의와 ‘사실적 주장’에 한정되어 있었다”면서, “우선적으로 이 같은 고전적 틀을 깨야 하며, 나아가 언론중재의 관할 범위와 언론 보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검색차단청구권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로봇이 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포스트휴먼(posthuman)’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포스트휴먼 시대의 언론중재 이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를 대행하는 언론



의 자유,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언론중재제도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특히 공직자, 공적인 인물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확실히 정립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은 “침해적 정보로 인한 피해의 확산은 LTE급인데 반해 피해구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양자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언론조정 대상을 보도에 국한하지 말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장로

에 관계없이 폭넓게 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언론중재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종합토론 중에는 고승욱 국민일보 온라인뉴스부장이 “언론 현장에서 기사삭제 요청을 받을 때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며 언론중재위가 기사삭제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용상 위원장은 이날 행사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기사삭

제청구권은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기사가 허위이지만 하면 보도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삭제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기사에 달린 댓글 역시 언론의 여론형성 기능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도 언론중재위가 기사와 함께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피해자 편의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박성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언론사, 포털 업계 관계자,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학계 인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양경승 교수



구본권 소장



김경환 변호사



김동규 교수



유봉석 센터장



윤성옥 교수